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유치를 위한 사항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40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구육성종합계획·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2
2. 특구내 외국인 학교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7
3. 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유치를 위한 기타 특례(안 제22조 의3 및 제25조의2)	15
※ 참고자료	
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0
2. 외국인학교와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제도 비교	2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Ⅲ. 검토의견

1. 특구육성종합계획·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생략)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u>양성에 관한 사항</u>	5. ----- ----- ----- <u>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u> (<u>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u>)
<신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u>
<신설>	5의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현행	개정안
6. (생략) 7. 외국인의 <u>투자유치 및 정주(定住)</u>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 15. (생략) ③ ~ ⑤ (생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략)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14. 외국인의 <u>투자유치 및 정주</u>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 16. (생략) ③ ~ ⑧ (생략)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특구에 있는 대학</u>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u>양성</u>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u> 6. (현행과 같음) 7. -----<u>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u>----- 8. ~ 1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u>----- 15. · 1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① ----- -----<u>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u>----- ----- ----- ---<u>양성·유치</u>-----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 마. (생략) 바. 연구개발 <u>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u> 사.·아. (생략) 3. ~ 5. (생략) ② (생략)	제48조(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전문 인력·사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유치, 고정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u> 사.·아.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연구개발특구”¹⁾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광역특구)과 좁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강소특구)으로 구성됨([참고 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현행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사업화라는 특구 육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전반의 육성 기본방향을 위한 “특구육성종합계획²⁾”과 특구별로 “특구개발계획³⁾”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개정안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 연구개발 인력등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만, 법제적인 측면에서 현행법에서는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한 “전문인력”⁴⁾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 법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보다 명확한 구별을 위해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연구개발 전문 인력”으로 약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⑧ (생략)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⑩ (생략)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구내 외국인 학교에 대한 특례(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유치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상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전·입학 우대 조치 등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 ----- -----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생략) <신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2.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내국인이 해당 특구의 외국인학교로 전학·입학하려는 경우 우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2(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2조⁵⁾는 연구개발특구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른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3년 9월 기준 특구내 2개(대전, 광주)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외국인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특구내 외국인학교 현황】

	대전외국인학교		광주외국인학교	
학교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개교일	1958.3.15		1999.3.14	
개설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수언어	영어		영어	
학생현황(명)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유치원	0	9	0	0
초등	32	53	0	1
중등	41	42	6	8
고등	137	51	9	8
합계	210	155	15	17

자료 : “교육청-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서비스” 기반으로 재구성

그러나 현재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원칙적으로 학생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⁶⁾ 특구내 우수 인력을 유치

6)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제주특별자치시의 국제학교와 불균형 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참고 2]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제도 비교).

개정안은 광역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요건 및 외국인학교 내국인의 수 비율 등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소속 직원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전·입학 우대 조치 등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특구의 과학기술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⁷⁾의 경우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의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이라는 입학 자격요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⁸⁾ 개정안은

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7)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외국인학교는 운영 중이지 않고, 4개의 국제학교를 운영 중임.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②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와 같이 특례 규정을 통해 입학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감”이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⁹⁾이므로, 안 제22조제2항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및 입학비율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조례로 규정한 부분은 부적절함.

개정안의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및 입학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의 사무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¹⁰⁾에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따라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해당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일 뿐, 조례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므로¹¹⁾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임.

한편, 교육부는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바, 조례는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개정안	검토 의견	
	교육부 수정의견	수정 사유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생략)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 및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u>교육감과 협의하여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u>	② 특구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특구 소재의 <u>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인 바, <u>조례는 시장·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정하여야 함</u>

1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개정안	검토 의견	
	교육부 수정의견	수정 사유
1.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거주 기간 요건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 비율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것인바, <u>관련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 필요</u>
2.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국인의 입학비율	

교육부의 수정의견을 검토해볼 때, 교육감은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사무만을 할 수 있을 뿐¹²⁾이므로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례의 제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부적절한 부분임.

둘째, 안 제22조제3항은 특구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시 우대 조치를 규정하여 과학기술인력 유치에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자칫 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과도한 입학 특혜를 부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전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동 조항은 부모의 지위에 따른 입학자격 부여로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고, 타 법률에도 입학자격에 관한 우대사항을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한 입법례는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셋째, 외국인학교의 입학 자격을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완화할 경우, 연구 관련 인력과 무관한 내국인이 자격제한 없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외국인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외국인학교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국인의 입학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면 우수 연구인력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는 등과 같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요건 완화 대상 범위를 연구 관련 인력에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유치를 위한 기타 특례(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 양성·유치를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

현행	개정안
	<u>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u> <u>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구내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査證) 발급 절차와 1회 체류기간 상한¹³⁾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3)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해외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유치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의 특례는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입법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 입법례 >

특별구역	입 법 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의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①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점지구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에 교육·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점지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항 중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발급한 대표 사증의 종류, 체류기간 상한은 다음과 같음.

구 분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단기취업(C-4)	90일
기술연수(D-4)	2년
주 재(D-7)	3년
기업투자(D-8)	2~5년
교 수(E-1)	5년
연 구(E-3)	5년
기술지도(E-4)	5년

특별구역	입 법 례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재단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 역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이라는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지정·구성된 지역¹⁴⁾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숙박시설은 관광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으로¹⁵⁾ 관광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타 지역과의 형평성,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5)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9

참고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지정	범 위	총면적	특화 분야
과학기술특구 (5)	대덕	'05.07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49.7km ²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등
	광주	'11.01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	18.6km ²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등
	대구	'11.01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19.4km ²	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부산	'12.11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15.8km ²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전북	'15.08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16.1km ²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등
강소특구 (14)	안산	'19.08 안산 상록구, 단원구 일원	1.73km ²	ICT융복합 부품소재
	김해	'19.08 김해 주촌면, 풍유동, 명법동 일원	1.13km ²	의생명 · 의료기기
	진주	'19.08 진주 가좌동, 충무공동 등 일원	2.17km ²	항공우주부품 · 소재
	창원	'19.08 창원 성산구 일원	0.65km ²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포항	'19.08 포항 남구, 흥해읍 일원	2.72km ²	첨단 신소재
	청주	'19.08 청주 서원구, 청원구 일원	2.85km ²	스마트IT부품 · 시스템
	구미	'20.08 구미 거의동, 신평동 등 일원	2.57km ²	스마트 제조 시스템
	홍릉	'20.08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1.38km ²	디지털 헬스케어
	울주	'20.08 울산 울주군 일원	3.01km ²	미래형 전지
	나주	'20.08 나주 빛가람동, 동수동 등 일원	1.69km ²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군산	'20.08 군산 미룡동, 소룡동 등 일원	2.70km ²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천안아산	'20.08 천안 서북구 등 아산 배방읍 등 일원	1.32km ²	차세대 자동차 부품
	인천	'22.06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일원	2.22km ²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춘천	'22.06 춘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등 일원	1.86km ²	바이오 의약 신소재

참고2

외국인학교와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포함)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개념	- 국내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하되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등 에 관해서는 외국 법령을 적용받는 학교	- 특별법이 규정한 특정지역이 속한 지자체와 위탁운영 법인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근거 법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유아교육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 목적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자녀 교육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에 대한 교육	-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설립 주체	- 외국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유치원·초·중·고) - 국내학교법인(초·중·고)	-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법인(비영리로 제한되지 않음)
입학 자격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녀 - 내국인(외국 거주기간 총 3년 이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녀 - 내국인(해외 거주 요건 없음)
설립 현황	전국 39개교 - 외국인유치원(1개교) - 외국인학교(38개교) ※ 특구내(대덕, 광주) 2개교 운영 중	제주특별자치도내 영어교육도시 내 4개교 - 한국국제학교 - NLCS jeju - Branksome Hall Asia - SJA jeju